

장기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하나UBS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

투자신탁명	하나 UBS 배당 60 주식투자신탁(제 1 호)
자산운용회사명	하나 UBS 자산운용 주식회사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대투증권(주) (☎1588-3111, www.hanaw.com) ■ 하나은행 (☎1588-1111, www.hanabank.com) ■ 현대증권 (☎1588-6611, www.youfirst.co.kr) ■ 대신증권(주) (☎1588-4488, www.daishin.co.kr) ■ IBK투자증권(주) (☎1588-0030, www.ibks.com)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 년 10 월 22 일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p>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p> <p>하나 UBS 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www.ubs-hana.com)</p> <p>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p>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평균 수익률, 연도별 수익률 추이)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 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6쪽)

1. 명 칭: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Class A : 69323 / Class C : 68877 / Class C2 : 73946]
2. 펀드존속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투자신탁유형: 증권투자간접기구(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공모형
4. 자산운용회사: 하나UBS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 본문 6~12쪽)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목적	- 신탁재산의 60%이상 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되,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집중투자 하여 배당수익과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 종목에의 집중투자로 안정적 배당수익을 목표로 간접투자재산을 국내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ubs-hana.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08년 9월 30일)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성창훈	40	부부장	26개	11,935억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주식투자분석 및 운용 5년

7. 투자실적 추이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기준일 : 2008년 5월 22일 / 단위: %)

연도	최근1년 2007.05.23 ~ 2008.05.22	최근2년 2006.05.23 ~ 2008.05.22	최근3년 2005.05.23 ~ 2008.05.22	최근5년 2003.05.23 ~ 2008.05.22	설정일 이후 2003.05.23 ~ 2008.05.22
배당60주식1호	21.55	25.26	31.77	28.33	28.31
배당60주식1 종류C	21.54				23.42
배당60주식1 종류A	22.54				22.54
배당60주식1 종류C2					1.94
비교지수	22.26	18.19	20.93	20.18	20.17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본문 12~18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Class A	Class C	Class C2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판매사 인터넷뱅킹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주1)	납입금액의 1.0%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운용보수	연 0.5946%	연 0.5946%	연 0.5946%
	판매보수	연 0.5874%	연 1.3874%	연 0.03%
	기타보수	연 0.058%	연 0.058%	연 0.058%
	보수합계	연 1.24%	연 2.04%	연 0.6826%
	기타비용(주2)	연 0.505%	연 0.505%	연 0.505%
총보수 비용비율(주3)		연 1.745%	연 2.545%	연 1.1876%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1회 부과하며, 환매수수료는 90일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007년 5월 23일부터 2008년 5월 22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10.20.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다만, 거주자로서 2009.12.31일까지 3년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적립식 투자를 계약한 경우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포함)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세제혜택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3. 매입·환매절차: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09:30 ~ 16:30)에만 가능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 납입 (3시 이전) 수익증권 매입 (D+1일 기준가 적용)</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 납입 (3시 이후) 수익증권 매입 (D+2일 기준가 적용)</p>
환매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p> <p>환매청구 (3시이전)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지급</p>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청구 (3시이후)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지급</p>

※ 의문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대표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을 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 칭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Class A : 69323/ Class C : 68877/ Class C2 : 73946]

-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 Class A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 Class C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 Class C2
 - 간접투자기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
 -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인 경우

2. 상품의 존속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투자신탁유형

증권투자간접기구(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공모형

4. 자산운용회사

하나UBS자산운용 주식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최초설정일 : 2003년 5월 23일

약관변경일 : 2005년 6월 7일(Late Trading 제도 도입)

2005년 6월 15일(펀드명 등 변경)

2005년 7월 22일(수탁회사 변경 : 하나은행 → 농협중앙회)

2006년 7월 3일 (시가총액 기준월 등 변경)

2007년 5월 14일 (종류형 변경)

2007년 8월 1일(투자신탁명칭 변경)

2007년 8월 30일 (Class C2 신설)

2008년 10월 28일 (국내주식에 60%이상 투자 명문화)

6. 수탁고 추이

(단위 : 억, %)

(기준일 : 2008년 5월 22일)

연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0080522	20071122	20070522	20061122	20060522
배당60주식1호	수탁고금액	5,978.63	5,437.85	1,688.61	2,200.50	1,486.02
	수탁고증가율	9.94	222.03	-23.26	48.08	3.67
배당60주식1 종류C	수탁고금액	5,922.30	5,401.62	1,688.61	0.00	0.00
	수탁고증가율	9.64	219.88	0.00	0.00	0.00
배당60주식1 종류A	수탁고금액	45.23	30.51	0.00	0.00	0.00
	수탁고증가율	48.26	0.00	0.00	0.00	0.00
배당60주식1 종류C2	수탁고금액	11.09	5.73	0.00	0.00	0.00
	수탁고증가율	93.70	0.00	0.00	0.00	0.00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 정보

1. 투자목적

국내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되,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위주로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

-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되,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여 배당수익과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주요 투자전략

국내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초과 수익 실현 추구

가. 기본운용방침

- 고배당 투자 pool에서 고배당, 실적개선, 저평가 종목에 우선 투자
- 정기적인 기업방문과 분석을 통하여 실적 및 배당정책을 면밀히 체크
- 주가, 실적, 배당정책 변동으로 배당수익을 변동시 이익실현 및 리스크 관리

구 분	배당투자POOL 구성 기준	비고
배당수익률	4%이상의 배당성향	
재무안정성	부채비율 200%이하	금융주 등
유동성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이상	일부종목은 업종특성
주가수준	PER, PBR 투자지표상 저평가종목	고려

*** 배당투자 Pool 구성기준은 시장상황 및 금리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채권, 어음 및 유동성부문 운용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신탁재산은 신용도 및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1) 가격변동위험

- 신탁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파생상품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국내 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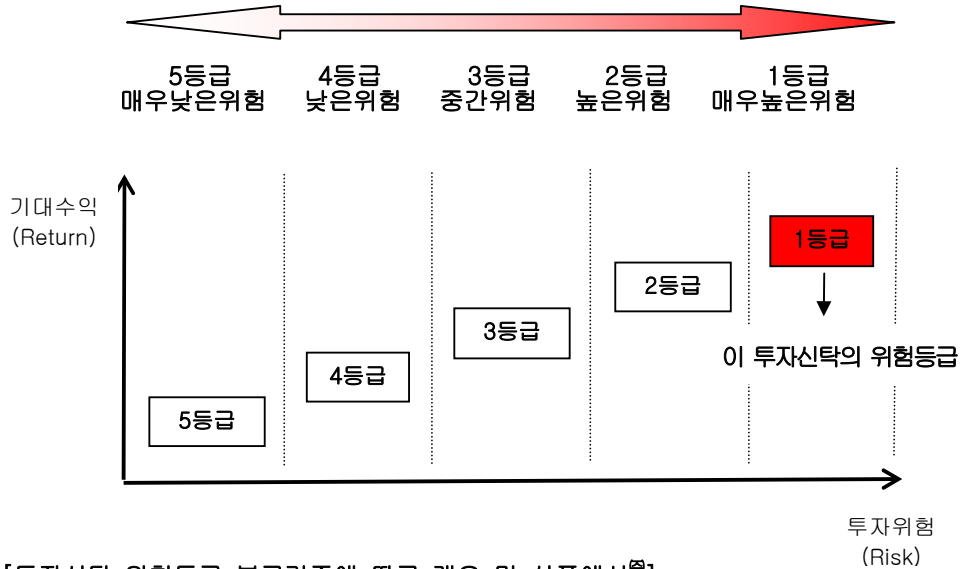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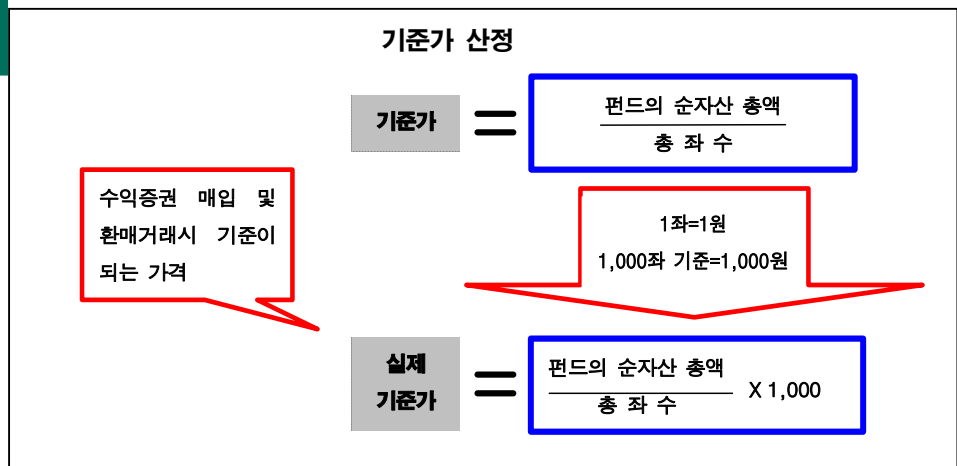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상품예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요 및 상품예시
1등급	매우높은 위험	<p>이 종류의 펀드는 주식, 회사채(투기등급까지 포함),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매우 높은 자본이익을 추구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매우 큰 폭의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p> <p>이 종류의 기초자산의 가치는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심한 변동을 보이며, 특히 주가는 개별기업의 성과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며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발행자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에 까지 투자하므로 유동성, 결제불이행등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매우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p> <p>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p> <p>예) 하나UBS China 주식투자신탁(제1호)</p>
2등급	높은위험	<p>이 종류의 펀드는 주식, 회사채(BBB-), 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높은 자본이익을 추구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펀드입니다.</p> <p>이 종류의 기초자산의 가치는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심한 변동을 보이며, 특히 주가는 개별기업의 성과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며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시장금리 변동과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p> <p>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 주식에 30%이상 ~60%미만 투자하는 펀드</p> <p>예) 하나UBS 뉴오토시스템 주식혼합투자신탁(제1호)</p>
3등급	중간위험	<p>이 종류의 펀드는 주식, 회사채(BBB-), 헤지목적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높은 자본이익을 추구하지만 채권에만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펀드입니다.</p>

		<p>이 종류의 기초자산의 가치는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심한 변동을 보이며, 특히 주가는 개별기업의 성과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며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시장금리 변동과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p> <p>중간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주식에 30% 미만 투자하는 펀드</p> <p>예) 하나UBS 아름다운실버배당 채권혼합투자신탁(제1호)</p>
4등급	낮은위험	<p>이 종류의 펀드는 국공채, 회사채(A등급)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시장금리상승에 의한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펀드입니다.</p> <p>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금리변동과 같은 시장 위험이 수반되며, 채권의 가치는 시장금리변동과 발행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p> <p>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국공채 및 신용등급 A등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p> <p>예) 하나UBS 클래스원 장기채권투자신탁(S-1호)</p>
5등급	매우낮은 위험	<p>이 종류의 펀드는 현금, 단기 국공채 및 단기회사채(AA 수준) 등 단기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자수익을 추구하지만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p> <p>단기채권에 대한 투자도 금리변동과 같은 시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펀드의 가치는 그들 각각의 기초투자자산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p> <p>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단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는 MMF 펀드 등</p> <p>예) 신종 MMF (S-36호)</p>

(주) 상기 예시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하나UBS자산운용 내부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예시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 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 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 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www.ubs-hana.com) · 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학력	운용 경력	주요경력	비고
성창훈	부장	서강대 경영학과	5년	- 주식투자분석 - 주식운용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투자 실적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 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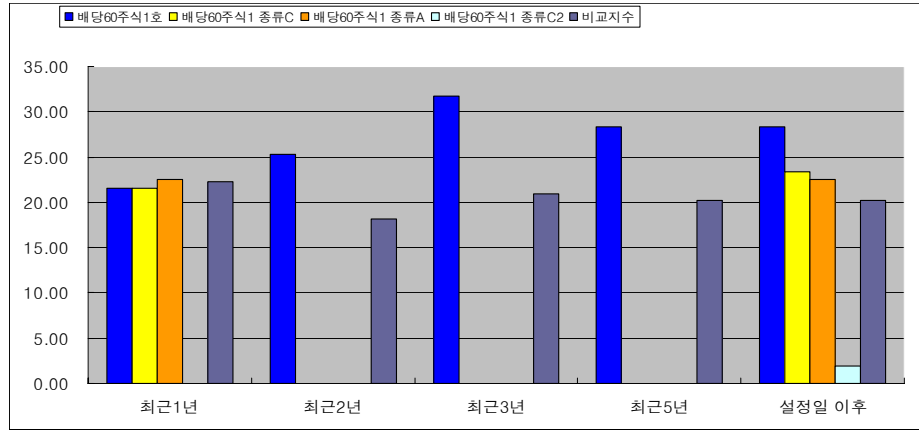
※비교지수 = KODI 지수 X 100%

(단위 : %)

(1) 연평균 수익률

(기준일 : 2008년 5월 22일)

연도	최근1년 2007.05.23 ~ 2008.05.22	최근2년 2006.05.23 ~ 2008.05.22	최근3년 2005.05.23 ~ 2008.05.22	최근5년 2003.05.23 ~ 2008.05.22	설정일 이후 2003.05.23 ~ 2008.05.22
배당60주식1호	21.55	25.26	31.77	28.33	28.31
배당60주식1종류C	21.54				23.42
배당60주식1종류A	22.54				22.54
배당60주식1종류C2					1.94
비교지수	22.26	18.19	20.93	20.18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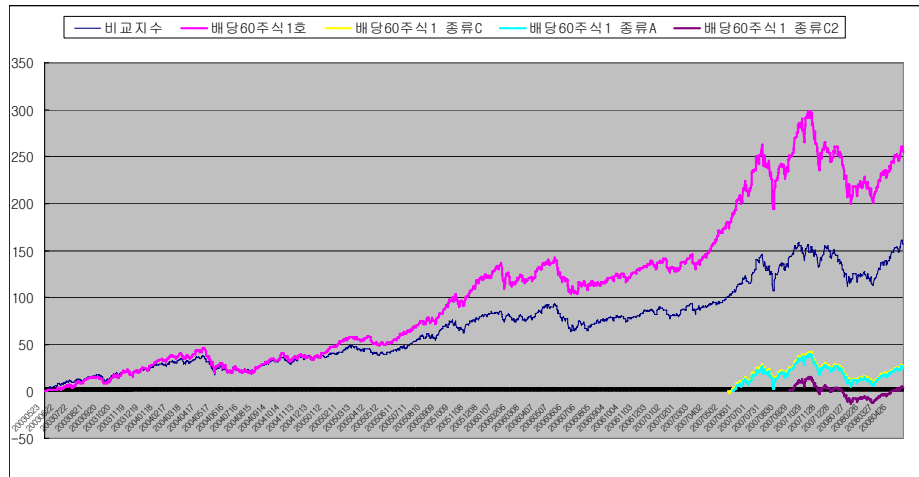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누적수익률을 연환산하여 계산되었습니다.
 ※표시된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 : %)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 2008년 5월 22일)

연도	최근1년차 2007.05.23 ~ 2008.05.22	최근2년차 2006.05.23 ~ 2007.05.22	최근3년차 2005.05.23 ~ 2006.05.22	최근4년차 2004.05.23 ~ 2005.05.22	최근5년차 2003.05.23 ~ 2004.05.22
배당60주식1호	21.55	29.09	45.83	19.92	26.84
배당60주식1종류C	21.54				
배당60주식1종류A	22.54				
배당60주식1종류C2	1.30				
비교지수	22.26	14.26	26.58	13.59	24.83



※투자신탁 설정 이후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 누적수익률로 작성하였으며 **2008년 5월 22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자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분 종류	지급비율(연간, %)		
	Class A	Class C	Class C2
선취판매수수료	1.0%	-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주) 이 투자신탁은 Class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종류	지급비율(연간, %)		
	Class A	Class C	Class C2
자산운용회사보수	0.5946%	0.5946%	0.5946%
판매회사보수	0.5874%	1.3874%	0.0300%
수탁회사보수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0.0180%	0.0180%
보수합계	1.2400%	2.0400%	0.6826%
기타비용(주1)	0.5050%	0.5050%	0.5050%
총보수 비용비율(주2)	1.7450%	2.5450%	1.1876%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007년 5월 23일부터 2008년 5월 22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기타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투자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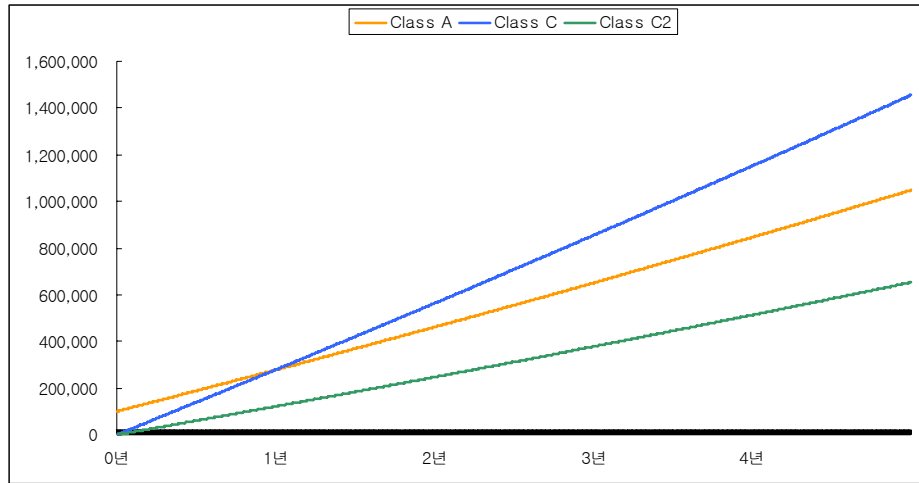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배당60주식 (운용펀드)	51,669	162,060	282,572	634,427
Class A	277,719	650,525	1,047,747	2,158,381
Class C	258,426	794,157	1,356,085	2,884,074
Class C2	121,202	377,552	653,691	1,440,932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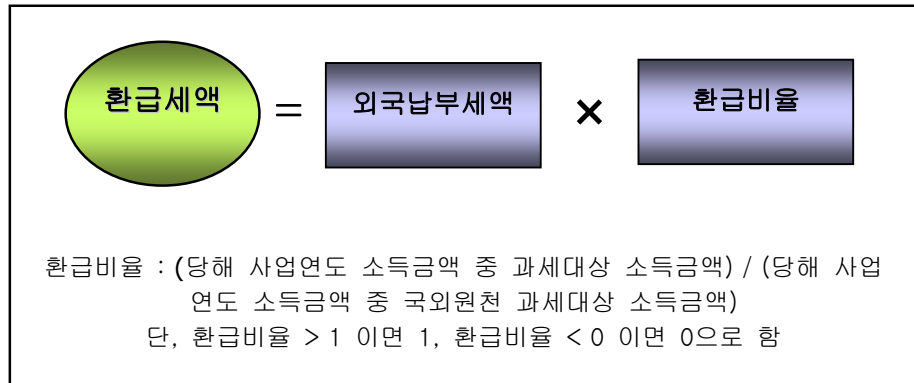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국내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이 때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14%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함). 다만,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가 얻은 모든 수익은 신탁기간 종료일, 펀드의 결산일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지급일, 환매일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①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 ②(거주자인 개인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세율 25%, **주민세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주의]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거주자가 가입하는 경우 한국과 해당국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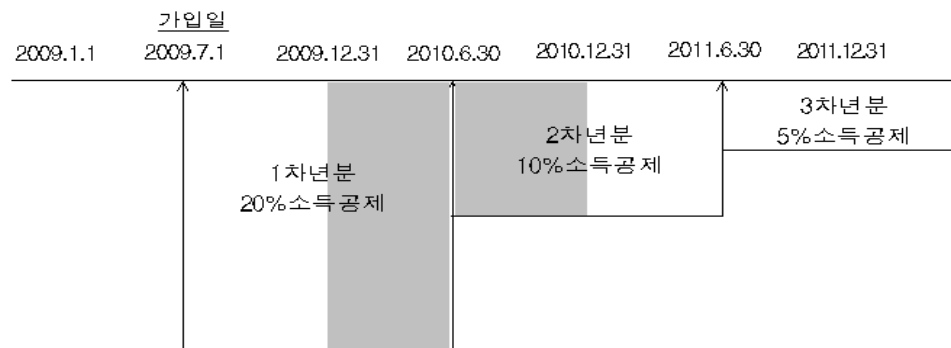
(4)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의 세제우대: 배당소득(농특세포함)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 이상,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의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 : 기존 적립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신규 가입자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
(다수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소득공제 예시 :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매입시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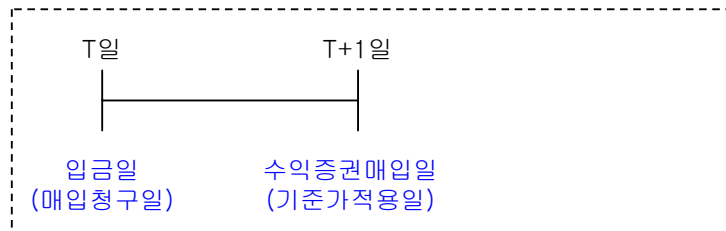
□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 Class A](#)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 Class C](#)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하나UBS 배당60주식투자신탁\(제1호\) Class C2](#)
 - 간접투자기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
 -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인 경우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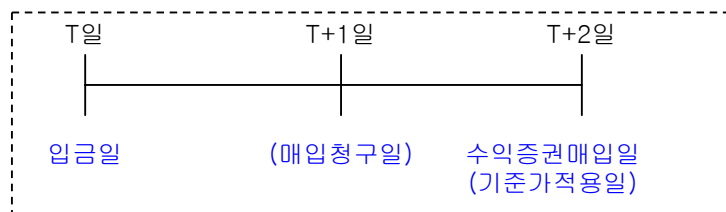
가) 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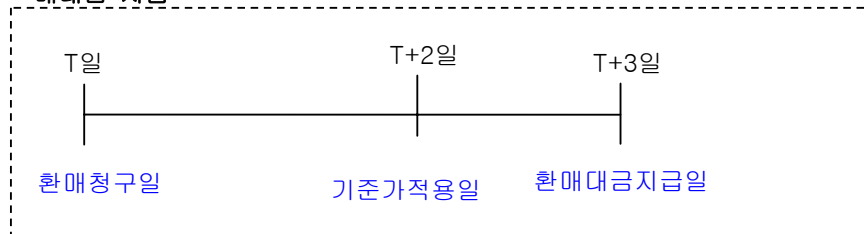
가) 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오후 3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환매제한, 환매연기, 부분환매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15시[오후 3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 전략

가. 기본운용방침

- 고배당 투자 pool에서 고배당, 실적개선, 저평가 종목에 우선 투자
- 정기적인 기업방문과 분석을 통하여 실적 및 배당정책을 면밀히 체크
- 주가, 실적, 배당정책 변동으로 배당수익률 변동시 이익실현 및 리스크 관리

구 분	배당투자POOL 구성 기준	비고
배당수익률	4%이상의 배당성향	
재무안정성	부채비율 200%이하	금융주 등
유동성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이상	일부종목은 업종특성
주가수준	PER, PBR 투자지표상 저평가종목	고려

* 배당투자 Pool 구성기준은 시장상황 및 금리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채권, 어음 및 유동성부문 운용

-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신탁재산은 신용도 및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2. 투자 위험

(1)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상장주식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

	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투자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 대상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주식	60% 이상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동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의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어음	40%이하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익증권등	5% 이하 단, 상장지수간 접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 가능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증권 총액 의 50%이하	법 제 2 조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 15%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채권총액의 50%이하	
기타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p>	
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단기대출, 파생상품 투자, 동일종목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Ⅲ. 투자증권 등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 선정기준

(1) 투자증권거래

구 분	선정기준
주식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주식운용팀, 주식운용지원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주식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채권 등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 및 회사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채권운용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채권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 합니다.

(2) 장내파생상품거래

구 분	선정기준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시스템부문, 운용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주식운용팀, 투자공학팀, 주식운용지원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주식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 합니다.

채권관련 등 장내파생상품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 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채권운용팀에서 개 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채권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 합니다.
------------------	--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하거나 판매 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 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 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 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 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 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신탁약관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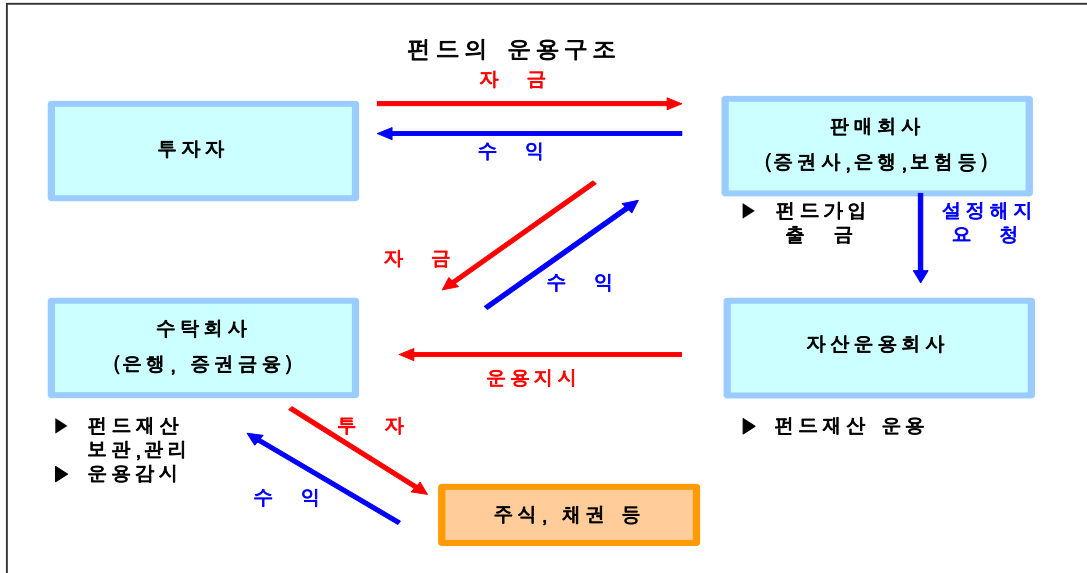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 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UBS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 : 3771-7800)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p>□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p>□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p>□ 자산운용회사의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p>□ 연대책임</p>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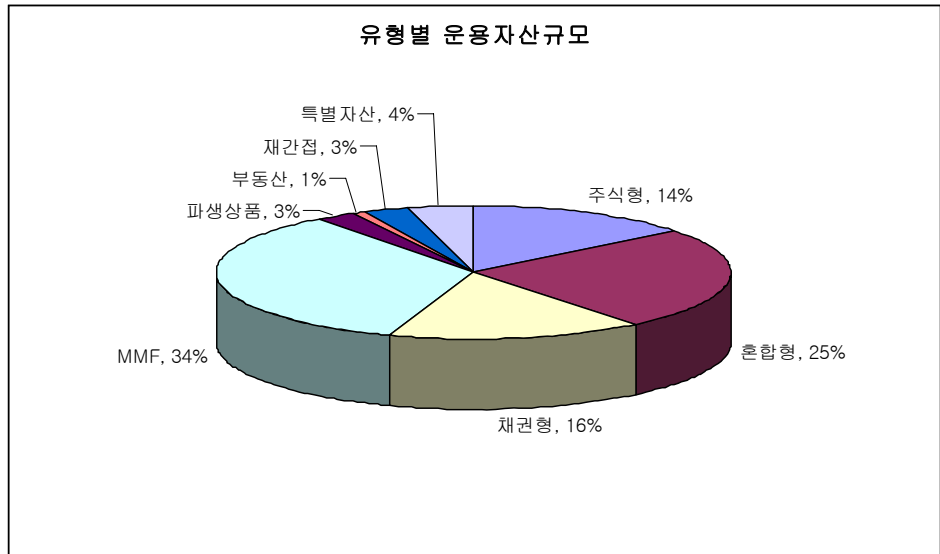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단위:백만원)

항 목	대차대조표		항 목	손익계산서	
	'07.03.31	'08.03.31		'07.03.31	'08.03.31
유동자산	75,718	71,972	영업수익	42,650	53,891
고정자산	3,693	9,476	영업비용	18,514	29,935
자산총계	79,411	81,448	영업이익	24,136	23,956
유동부채	7,767	13,364	영업외수익	143	58
고정부채	891	0	영업외비용	43	200
부채총계	8,658	13,364	경상이익	24,236	23,814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25,753	22,985	특별손실	-	-
자본조정	0	99	법인세	6,730	6,582
자본총계	70,753	68,084	당기순이익	17,506	17,232

4. 운용자산규모 (2007. 12. 31 현재) (단위: 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총 계
27,903	48,667	31,903	66,943	5,085	1,500	5,635	8,140	195,776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2008.9.30 기준)		주요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성창훈	40	부장	26개	11,935억	- 서강대 경영학과 - 주식투자분석 및 운용 5년	-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하나UBS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하나은행(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T : 2002-1111)
	연혁	1971.06 한국투자금융(주) 설립 1991.07 하나은행으로 전환 1998.10 충청하나은행 출범 1999.01 합병 하나은행 출범 2002.12 서울은행과 통합
	영업점포현황	서울지점 : 144개, 지방지점 : 부산지점 등 142개
	주요판매실적	2003년 12월 8,625억 2004년 12월 38,850억
	하나대투증권(주)	주소
하나대투증권(주)	연혁	-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 2003.06.05 사명변경 (대한투자신탁증권(주) → 대한투자증권(주))

		- 2007.07.02 사명변경 (대한투자증권(주) → 하나대투증권(주))
현대증권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권빌딩 2,3 층
	연 혁	1962년 6월 증권업 허가 1986년 상호를 현대증권주식회사로 변경
	영업점포현황	지점수 130 개(영업소 3 개)
대신증권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연 혁	1962.7.27 설립
IBK투자증권	주 소	서울 중구 을지로 2 가 50
	연 혁	2008.07 영업개시

(1) 주요 업무

-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2. 수익증권 환매업무
3.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4.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
서 규정한 업무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 판매회사의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의 책임

-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수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간접투자재산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 수탁회사의 의무

- 수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수탁회사의 책임

-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영등포구여의도동 26-4 (02-3771-9833)
회사연혁	2000.3.23 에이엠텍 설립 2000. 5. 2 에이엠텍 설립등기 2003. 8. 1 HSBC, 에이엠텍 지분인수(82%) 2004.10. 1 HSBC 펀드서비스(주)로 사명변경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자산운용회사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06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연락처	02-3770-0400	02-398-3900	02-399-3350
설립일	2000. 6. 20.	2000. 6. 16	2000. 5. 29
등록일	2000. 6. 29.	2004. 6. 29	2000. 7. 1.
자본금	30억원	55.5억원	50억원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자산운용회사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 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 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

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

- 이 상품의 신약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하나UBS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ubs-hana.com) 또는 자산운용협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 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약관 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1회 이상 공고
- 신탁약관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수탁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

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0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ubs-hana.com),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 101 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용어	내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 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자산운용 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헷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

	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헛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 (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헛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편 드 명 : 하나 UBS 배당 60 주식투자신탁(제 1 호)
- 판 매 일 :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